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9 (6 -10 Feb. 2023)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3-23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Subject: Newsflash of HTW 9

제9차 인적 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이하 "HTW 9차")가 2023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하이브리드(대면·화상)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HTW 9차 주요 논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도 향후 MSC에서 채택되어야 법적으로 발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훈련과정(IMO Model Training Course)의 유효화 [의제3]

- 본 회의장에서 11개 표준훈련과정*의 유효화에 대하여 초안작업반(DG) 검토 후 특별한 이견 없이 유효화 승인됨
 - * 9개 표준훈련과정 개정안(1.23 생존정/구조정 숙련도, 1.20 화재예방/소화, 2.03 상급소화훈련 등), 2개 신설안(기관자원관리 등)
 - (표준훈련과정 검토 공통사항) 표준훈련과정의 개요표를 STCW Code A 에서 요구하는 지식 및 기술 요건에 맞추고, 과목별 배정되었던 교육 시간은 전과정 소요 시간으로 조정함
 - * 표준훈련과정의 과목별 주요 용어들을 '모델코스 개발, 검토 및 유효화를 위한 지침(MSC-MEPC.2/Circ.15/Rev.2) 부록4 모델코스용 표준동사 목록에 따라 자구 수정함
 - ** 실습 시 강사 1명당 교육생을 최대 6 ⇒ 8명으로 권고안 개정, 1.24 고속구조정 숙련도 개정 초안의 경우, 시뮬레이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예, 교육사용 시뮬레이션 장비는 선급인증必)을 포함
- 차기 HTW 11차('25년)까지의 개정할 5개 표준훈련과정*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완료
 - * 3.20 선사 보안사관, 3.21 항만시설 보안사관, 3.23 무장강도 및 해적예방을 위한 조치, 1.25 GMDSS 일반 운용자 및 1.26 제한 운용자자격



No. IMO-0003-23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2. 선원의 훈련·자격 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STCW) 개정 [의제기]

- 2010년 STCW 협약* 개정 이후 친환경선박, 스마트선박 등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 등장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선원교육과정 신설에 대한 요구 증대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 이러한 기술적·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STCW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협약의 전면 검토 및 개정 착수*
* 제105차(21.4월)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STCW 협약 전면 개정' 의제를 채택하고 2026년 작업완료를 목표로 동 전문위원회(HTW)의 작업계획에 포함시킴
- STCW 협약 전면 검토 및 개정 작업을 위한 목표와 기본 원칙을 정하고, 회기간 실무작업반 작업 위임사항 마련
 - (실무작업반 위임사항) 호주 외 34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공동 제출한 문서(HTW 9/7/4)를 바탕으로 작업 범위 및 로드맵을 수립할 것
 - (목표) ①유능한 선원 양성, ②선원교육, 훈련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 기준 확립, ③신기술 반영, ④동 협약의 회원국 간 일관된 이행 증진
 - (원칙) ①선박운항에 적용된 신기술 반영, ②현 협약 약화 방지, ③불필요한 행정부담 지양, ④선원의 교대 및 이동의 간소화 규정 마련 등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9 (6 -10 Feb. 2023)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3-23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3. 성폭행·성희롱을 포함한 따돌림과 괴롭힘에 관한 교육훈련 STCW 협약 코드 개정 [의제7]

- 해사안전위원회(MSC)가 “성폭행 및 성희롱을 포함한 따돌림 및 괴롭힘”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고, 동 전문위원회(HTW)에 관련 교육내용 개발 사항을 위임
 -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초안전교육에 “성폭행 및 성희롱을 포함한 따돌림 및 괴롭힘” 교육내용을 추가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다수 국가 지지 의사 표명
- “성폭행 및 성희롱을 포함한 따돌림 및 괴롭힘” 교육과 관련, 우리나라 등이 제안한 교육내용 개발* 등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의 지지가 있었으나, 추후 논의키로 정리
 - * 심리적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도미니카 외 15개국)
 - * 해기면허 취득 요건으로 “성폭행 및 성희롱을 포함한 따돌림 및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대한민국, 미국, 도미니카 외 15개국)
 - * 성폭행 및 성희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선원인권교육 개발(대한민국)



No. IMO-0003-23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4. 어선원의 훈련·자격 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STCW-F) 개정 [의제8]

- 회원국의 STCW-F* 비준 촉진**을 위해 2016년부터 개정을 논의 중이며 이번 제9차 HTW 회기에는 5개 문서가 제출되어 논의
 -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1995*
 - * 2023년 현재 총 35개국 비준, 아시아 국가는 시리아, 인도네시아만 비준
- 회기 간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어선원 건강진단서 지침(안)을 개발 완료함
 - 상선원 협약(STCW)의 건강진단서 지침을 바탕으로 마련되었기에, 특별한 이견 없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회원국이 지지 의사를 표명
- 아이슬란드 등 일부 국가들이 STCW-F 협약 상 「Fishing Vessel Personnel」의 정의와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상 「Fisher」의 정의가 같으므로, STCW-F 협약에서 사용하는 「Fishing Vessel Personnel」 대신 「Fishier」를 사용하자고 제안
 - 용어 변경에 따른 법률적 영향과 협약 본문(제목 포함)과 부속서 개정 절차가 상이함*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회원국**에서 반대 의사 표명
 - * STCW-F 협약 제10조에 따라 협약 본문은 명시적 방법(회원국 2/3 이상 수락 의사 표명)을 통해 개정, 부속서는 묵시적 방법(1/3 이상 반대 없을 경우)을 통해 개정
 - ** 우리나라, 일본, UAE, 뉴질랜드, 팔라우, 아르헨티나, 태국, 도미니카 등
 - 우리나라는 STCW-F 협약 개정작업 초기인 제3차 HTW 회의(2016년)에서 합의한 개정작업 범위에 관한 논의 결과를 언급하며, 협약 본문 개정은 이번 STCW-F 개정작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용어 변경에 반대 의사 표명
 - 의장은 IMO 사무국에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한 법률적 영향 분석을 요구하며, 그 결과를 차기 MSC 회의에서 공유되도록 요청함



No. IMO-0003-23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5. STCW 협약에 따른 의무승선실습 품질보장 및 촉진을 위한 조치 개발 [의제9,10]

- 승선실습을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일부 대체하는 등 의무 승선실습 품질보장 및 촉진을 위한 조치방안 개발 논의
 - 이와 관련, 스웨덴, 미국,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들은 회기 간 실무작업반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피력
 - 조치방안에 관해서는 “STCW 협약 전면 검토 및 개정” 작업시 논의키로 결정
- 해기사 실습생을 위한 의무승선실습 촉진 조치로서, 민간선박에 배치되는 실습생 수를 규정하자는 인도의 제안에 대해서는 스웨덴, 일본, 네덜란드 등 다수의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의장이 추가 논의 없이 종결 처리

6. 기타사항 [의제14]

선원 전자 개인증서 사용지침(안) 검토

- 지난 회기에 이어 선원 전자증서와 관련하여 진위여부 확인의 주체에 대해서 추가 논의*하였으나, 회원국 다수는 증서발급의 책임과 권한은 주관청에 있다는 입장으로 안건 수정 없이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에 최종 제출(HTW 8/16, Annex 9)
 - * 제106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쿡아일랜드 등이 전자증서 진위여부 검증수단 제공 주체(해기면허 발급 주관청 또는 배서 주관청)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Briefings of IMO Meeting

HTW 9 (6 -10 Feb. 2023)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3-23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북극해에서 중유(HFO)를 선박 연료유로 사용시 위험성 경감조치를 위한 지침(안) 검토
 - 북극해에서 연료로 기름 사용 및 운송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MARPOL Annex I, Reg.43A)의 이행을 돕기 위해 PPR 에서 개발된 지침 초안 중 일부 섹션(친숙화/교육/훈련) 검토
 - 작업반에서 STCW 협약에 맞게 자구 수정* 완료 → 제10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에 검토결과 회신 예정
- * (예) (전) Crew -> (후) Seafarers

General Manager of

Statutory System Certification Team

P.I.C:

PAK Sihyeon / Deputy Senior surveyor

Statutory System Certification Team

Tel: +82 70 8799 8345

Fax: +82 70 8799 8319

E-mail: conaudit@krs.co.kr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